

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 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	<b>통보국가:</b> 일본 <b>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</b>
2.	<b>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</b> 일본 후생노동성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.
3.	<b>조항 2.9.2 [X], 2.10.1 [ ], 5.6.2 [ ], 5.7.1 [ ], 3.2 [ ], 7.2 [ 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</b>
4.	<b>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</b> 화장품(HS: 33)
5.	<b>제목(페이지수, 언어):</b> 화장품 표준 부분 개정(1페이지, 영어)
6.	<b>내용:</b>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제품의 품질, 효능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표준의 부록 2-2를 개정한다.
7.	<b>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</b> 화장품 표준의 부록 2-2(화장품의 종류 또는 용도에 따라 제한되는 성분)에 2-Aminoethanethiol monohydrochloride를 추가한다.
8.	<b>관련 문서:</b>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제품의 품질, 효능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<a href="https://www.japaneselawtranslation.go.jp/en/laws/view/3213">https://www.japaneselawtranslation.go.jp/en/laws/view/3213</a> 이 개정은 채택시 '관보(KAMPO)'에 게재된다.
9.	<b>채택 예정일:</b> 2024-06 말(예정) <b>시행 예정일:</b> 2024-06 말(예정)
10.	<b>의견 마감일:</b> 통보일로부터 60일

11.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X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

일본 질의처

국제무역부

경제부

외교부

팩스: (+81 3) 5501 8343

이메일: [enquiry@mofa.go.jp](mailto:enquiry@mofa.go.jp)

[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JPN/24\\_02623\\_00\\_e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JPN/24_02623_00_e.pdf)